사 업 명

(1) 생계급여 (1131-30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	23	사회복지정책실		080	081
명칭	일반회계	보건복지부	복지정책관		사회복지	기초생활보장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1	300
명칭	기초생활보장	기초생활급여	생계급여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				서울40~60%,	
					지방70~90%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	2023년 예산	2024년		증감	
71 H 6	결산	본예산(A)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생계급여	5,386,007	6,014,148	7,541,072	7,541,072	1,526,924	25.4

4. 사업목적·내용

- (생계급여)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
- (기초생활보장관리)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, 지자체 교육·점검, 제도개선 연구, 사업 홍보,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 ~ 제10조

제7조(급여의 종류)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생계급여
- 2. 주거급여
- 3. 의료급여
- 4. 교육급여
- 5. 해산급여(解産給與)
- 6. 장제급여(葬祭給與)
- 7. 자활급여
-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
-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(이하 "차상위자"라 한다)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생계급여의 내용 등)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,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.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
 -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생계급여 선정기준"이라 한다)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.
 -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
- 제9조(생계급여의 방법)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. 다만,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
 -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)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. 다만, 수급자가 주거가 없 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.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.

② 추진경위

- 1961~2000. 9월 :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
- 2000. 10월 이후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
-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: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('03.1.1시행)
- 부양의무자 범위축소: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→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('05.7.1시행)
-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: 최저생계비 120% → 130%로 상향조정('06.7.1시행)
- 부양의무자 범위축소: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→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('07.1.1시행)
- 수급권자 확대 :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 부여('07.1.1시행)
-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3,800-5,400만원 중소도시 3,100-8,400만원 농어촌 2,900만원 '09.1.1시행

-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: 대도시 9,500→13,300만원, 중소도시 7,750→10,850만원, 농어촌 7,250→10,150만원('09.1.1시행)
- 부양의무자 부양비 인하: 아들기준 40%→30%('09.1.1시행)
-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등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구간을 185%로 확대('12.1.1시행)
-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: 대도시 13,300→22,800만원, 중소도시 10,850→ 13,600만원, 농어촌 10,150만원('13.1.1시행)
-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: 4.17% → 1.04%('13.1.1 시행)
- 시설운영의 소규모화를 고려하여 30인미만 보장시설에 대한 생계급여기준 신설(13.1.1 시행)
- 대통령 공약사항(42) 및 국정과제(43) 「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」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('14.12.30. 공포, '15.7.1.시행)에 따른 맞춤형급여 체계 개편 * 주거급여(국토부), 교육급여(교육부) 각 소관부처 이관
-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('17.8월) 및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('17.11월)
-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('19.1월)
- 부양의무자 재산환산율(4.17%→2.08%) 완화('19.9월)
-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('20.1월)
 - *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합산 9억원 초과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
- 부앙의무자 부앙비 인하(아들30%, 결혼한딸 15% → 10%), 25~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30% 신설(20.1월)
-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*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** 현행화('20.1월)
- * (대도시) 5400만→6900만 / (중소도시) 3400만→4200만 / (농어촌) 2900만→3500만
- ** (대도시) 1억→1.2억 / (중소도시) 6800만→9000만 / (농어촌) 3800만→5200만
-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('20.7월)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('20.8월)
- 숙하기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시 부양무자 기준 적용 제외(21.1월), 생태여 부양무자 기준 전면 폐지(21.10월)
 - *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합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제외
- 지역구분 개편 및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*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** 상향('23.1월)
- * (지역구분) 대도시/중소도시/농어촌 → 서울/경기/광역·세종·창원/그 외
- ** (기본재산공제액) 3500만 6900만 → 5300만 9900만 / (주거용재산) 5200만 120백만원 → 112백만원 172백만원

6. 주요내용

① 사업규모

- 총사업비 : 해당 없음

- 사업기간 : 1961년부터~(단년도 계속사업)

- 기타: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 수급자 '23년 11월 기준 161만명, 120만가구

② 사업추진체계

- 사업시행방법 : 자치단체 보조, 직접수행

- 사업시행주체 : 보건복지부, 지자체

- 사업수혜자 : 기준 중위소득 30%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 수급자
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내역사업명	구분	피보조 · 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금액 (2024예산)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생계급여	보조	지자체	7,541,072	서울 40~60%	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
		보조		그외70~90%	제10조

7. 사업 집행절차

보건복지부(정책결정, 보조금 교부) \rightarrow 시도(보조금 교부) \rightarrow 시군구(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) \rightarrow 수급자